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59 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 12.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559 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7.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수산물 모니터링 검사를 상위법령에 따라 무작위검사로 전환하고, 양식가능어류를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모니터링 검사를 무작위 표본검사로 전환(안 제23조 삭제, 안 별표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서 서류검사 대상의 경우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현행 모니터링 검사를 무작위검사로 전환하고자 함

나.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수산물 조정(안 별표 4)

국내외 양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산물 품목을 조정하고자 함(명칭 변경 8건, 품목 추가 18건)

3. 의견 제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3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5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본문 중 “서류검사(별표 1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제외한다)”를 “서류검사”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어류

가물치류, **가숭어**, 감성돔, 강담돔, 강도다리, **갯농어(또는 밀크피쉬)**,

구갈돔, **균평선어**, **꼬리큰점바리**, **나일선농어**, **날새기**, **넙치**, **농어**,
능성어, **다금바리**, **대농갱이**, **대두어**, **대문짝넙치(또는 터벗)**,
도라다(또는 귀족돔), **독가시치**, **돌가자미**, **돌돔**, **동갈돔**, **동갈민어**,
동자개류, **드렁허리**, **말쥐치**, **메기류(담수산)**, **무늬바리**, **무점매가리**,
문치가자미, **미꾸라지**, **민어**, **방어류**, **백련어**, **뱀장어**, **벤자리**, **벵에돔**,
병어, **보리멸**, **블락**, **부세**, **붉돔**, **붉은쏨뱅이**, **붉통돔**, **붕어류**, **산천어**,
새눈치, **세네갈서대**, **송어류**, **송어**, **쏘가리**, **쏨뱅이**, **어름돔**, **연어류**,
은어, **잉어류**, **자바리**, **자붉돔**, **자주복**, **전갱이**, **전어**, **점넙치**, **점농어**,
조니통돔, **조피블락**, **종어**, **쥐노래미**, **쥐돔**, **쥐치**, **참돔**, **참복(또는**
검자주복), **철갑상어류**, **청돔**, **초어**, **큰입선농어(또는 바라문디)**,
큰입우럭(또는 베스), **틸라피아**, **파쿠**, **홍민어**, **홍바리**, **황복**,
황점블락, **홍기흑점바리**, **흑점줄갱이** 및 **상기이외 활어류**

다. 연체류

전복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 중인 수입수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수입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조치) ① 지방청장은 제4조 제1항의 수산물에 대해 동일국 동일 품목별로 연간 2 %를 추출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p> <p>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회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인, 보관장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일국 동일 품목은 연속적으로 10 회까지 부적합 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p>	<p><삭 제></p>